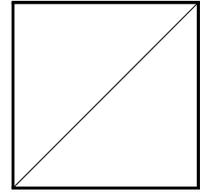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46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0. 12. 22. (제 22 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개정결과 보고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2. 22.

1. 보고주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의 개정 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을 개정('20. 9. 11. 의결)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배경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5월 'IFRS 2018-2020 연차개선' 개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응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개정
- 이를 반영하기 위해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16호 '리스', 제1041호 '농림어업'을 개정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시행일
• IFRS 1 <i>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2022년 1월 1일
•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22년 1월 1일
• IFRS 16 <i>Leases</i>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 IAS 41 <i>Agriculture</i>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2022년 1월 1일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현행)** K-IFRS 제1101호 문단 D16(1)¹⁾에서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K-IFRS를 최초채택하는 경우, 자산·부채 측정에 관한 면제규정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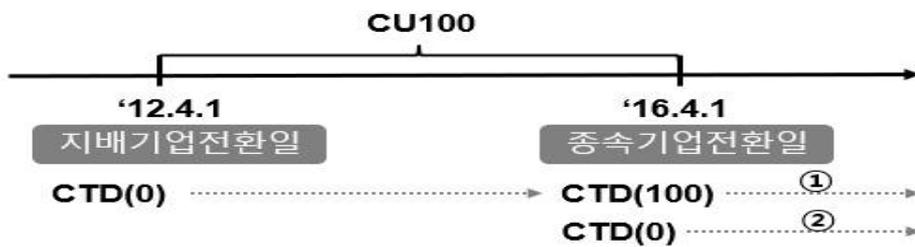
1) D16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종속기업은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를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1)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 (중략)

- 즉, 문단 D16(1)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를 지배기업의 K-IFRS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음
- 이 면제규정은 누적환산차이(이하, 'CTD(cumulative translation differences)')*와 같은 자본의 구성요소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 서로 다른 전환일 기준으로 각각의 회계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 관련 참고사례['17.03월 IFRS 해석위원회 회의자료]2)**



- ☞ 지배기업이 문단 D13(1)을 적용하여 CTD를 영(0)으로 간주한 시점인 '12.4.1일 이후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누적된 환산차이를 CU100으로 가정
- ①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전환일인 '12.4.1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CTD(100)를 보고
- ② 종속기업은 자신의 전환일인 '16.4.1일에 문단 D13(1)을 적용하여 CTD를 영(0)으로 간주하여 CTD를 보고

○ (개정) 문단 D16(1)의 면제규정 적용범위에 자산과 부채뿐만 아니라 CTD도 포함 (다만,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선택 적용하도록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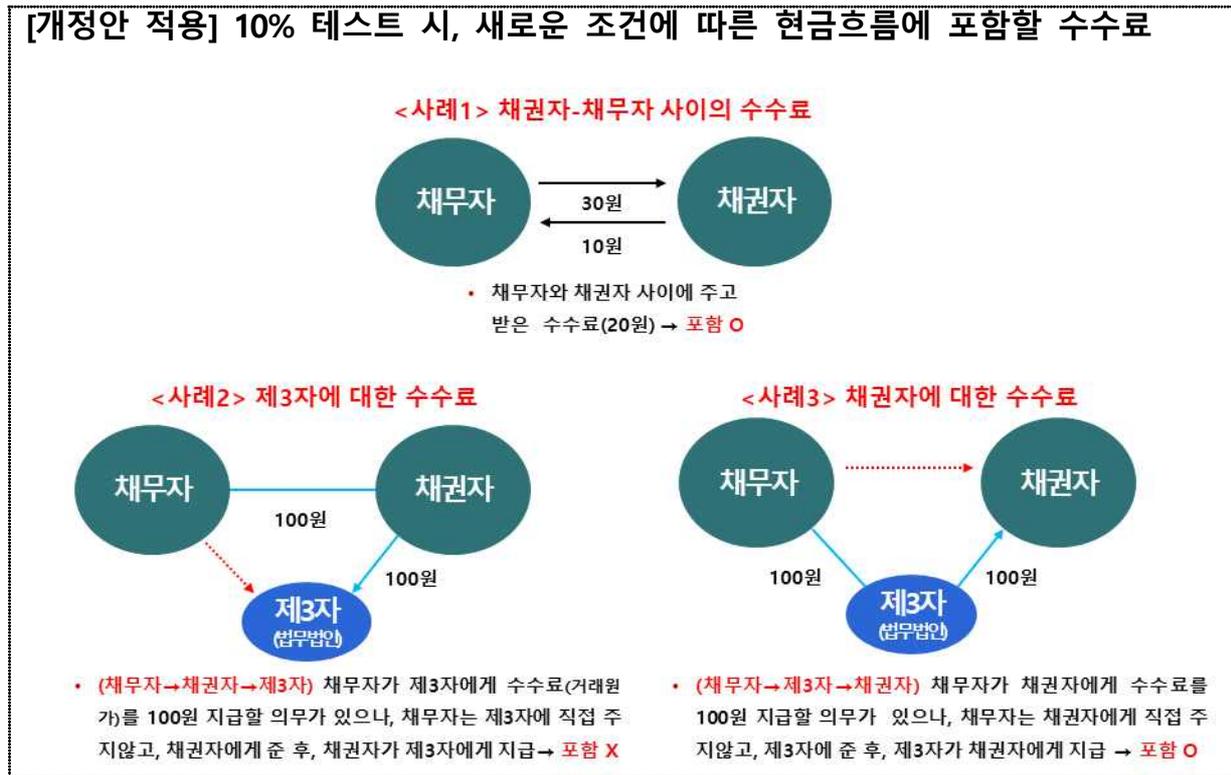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 (현행) 계약 변경시, 문단 B3.3.6의 10% 테스트*를 할 때, 지급한 수수료는 새로운 조건의 금융부채 현금흐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수료를 포함해야 하는지 불명확

* 10% 테스트: 차입자와 대여자간에 금융부채 조건을 변경한 경우,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기존 금융부채의 잔여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차이가 10% 이상인지 확인하는 테스트

2) 공개초안에는 동 사례가 없었으나,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IFRS 해석위원회 회의 자료의 사례를 추가하였음

- (개정) 계약 변경시, 문단 B3.3.6의 10% 테스트를 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 등만 새로운 조건의 금융부채 현금흐름에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 (현행) K-IFRS 제1116호 사례 13*¹의 사실관계*²가 제한되어 리스이용자가 제공자에게서 받는 리스개량 변제액을 리스 인센티브로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불명확 (→ 리스 인센티브 여부 판단에 혼란 유발)

*1. 사례 13의 관련 내용

- (사실관계)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가 한 리스개량 7,000원을 변제해주시기로 합의
- (설명)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에게서 받는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 인센티브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관련되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이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개량에 들인 원가는 사용권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2. 리스개량이라 불리는 자산이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지(리스이용자의 자산), 아니면 그 리스기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리스제공자의 자산)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음. 예를 들어 해당 자산을 그 리스이용자만 사용한다면, 리스개량 변제액은 리스 인센티브에 해당할 수 있으나, 리스개량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리스제공자의 자산이라면 리스 인센티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정) K-IFRS 제1116호 사례 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 삭제**

-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개량 원가를 변제해 주기로 합의했다는 기술과 이것을 리스 인센티브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결론 및 이유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

* 따라서 회사는 리스개량 변제액이 K-IFRS 제1116호의 리스 인센티브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리스 인센티브에 해당한다면 K-IFRS 제1116호의 문단 24에 따라 회계처리함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 **(현행) K-IFRS 제1041호 문단 22에 따르면,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공정 가치 측정 시 자산에 대한 세금 관련 현금흐름은 불포함해야 하므로,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의 측정 원칙과 비일관**

□ **(개정)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원칙과 일관되게, K-IFRS 제1041호 문단 22의 ‘세금(taxation)’ 관련 문구를 삭제**

-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과 일관되게 생물자산 등의 공정가치 측정시, 세후현금흐름에 대해서는 세후할인율, 세전현금흐름에 대해서는 세전할인율을 적용 가능**

다. 시행일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2022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허용됨. 조기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함**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함**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 '적용사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K-IFRS 제1116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경과규정이나 시행일 불필요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라.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 측정에 대해 면제조항을 추가하여 종속기업의 K-IFRS 최초채택 실무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됨(개정 내용을 전진적용하므로 소급 적용에 따른 실무부담도 없음)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서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 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므로 소급 적용에 따른 실무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 리스개량 변제액이 리스 인센티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삭제하여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때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됨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 생물자산 등의 공정가치 측정시,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원칙과의 상충 및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개정경과

- 2020. 7. 17. 개정 공개초안 의결(회계기준위원회)
- 2020. 7. 20. ~ 2020. 8. 21.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금융감독원 등)
- 2020. 9. 11.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나.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보고(2020.12.16.)

다. 관련법규(붙임1)

<별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9. 11.

저작권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0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재무보고기준의 정보는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재무보고기준의 본문, 또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0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and is publish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4th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내 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1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적용사례 개정	16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적용사례 개정	1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문단 39AG와 부록 D의 문단 D13A를 추가하였다. 문단 D1(6)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시행일

...

39AG 2020년 O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D1(6)을 개정하였고 문단 D13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부록 D.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D1 다음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6) 누적환산차이(문단 D12~D13A와 ~~D13~~)

...

누적환산차이

...

D13A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문단 D12나 문단 D13을 적용하는 대신에, 재무제표에서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결론도출근거 수정

문단 BC30(4)를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문단 BC55 다음에 새로운 소제목과 문단 BC55A~BC55C를 추가하였다. 이 문단들과 이와 관련된 소제목은 읽기 쉽도록 밑줄을 긋지 않았다.

BC30 기업은 다음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4) 누적환산차이 (문단 BC53~BC55CBC55)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IFRS 2018-2020 연차개선)

BC55A 문단 D16(1)에서는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에게 자산과 부채의 측정과 관련된 면제규정을 제공한다. 문단 BC59~BC60에서는 종속기업이 서로 다른 전환일을 기준으로 한 두 조(two parallel sets)의 회계기록을 유지하지 않도록 IASB가 이러한 면제규정을 제공하였다고 설명한다.

BC55B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은 자본의 구성요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단 D13A를 추가하는 개정을 하기 전에는,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된 종속기업은 서로 다른 전환일을 기준으로 한 두 조(two parallel sets)의 누적환산차이에 대한 회계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문단 BC59~BC60에서 기술한 이유에 따라, IASB는 최초채택기업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의 적용범위를 누적환산차이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1에서 이미 누적환산차이와 관련된 면제규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이 보고하는 정보의 목적적합성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BC55C 문단 D16(1)을 적용하는 기업은 일부 상황에서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문단 D16(1)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이 누적환산차이에 대하여 이 면제규정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되, 요구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문단 7.1.9, 7.2.35와 문단 7.2.35의 소제목, 문단 B3.3.6A를 추가하였다. 문단 B3.3.6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문단 B3.3.6A의 요구사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문단 B3.3.6에서 분리하였다.

제7장 시행일과 경과규정

제7.1절 시행일

...

7.1.9 2020년 0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7.2.35와 B3.3.6A를 추가하고 문단 B3.3.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제7.2절 경과규정

...

연차개선에 대한 경과규정

7.2.3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은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된 금융부채에 적용한다.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

인식과 제거(제3장)

...

금융부채의 제거(제3.1절)

...

B3.3.6 문단 3.3.2를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결정할 때,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한3)}만 포함한다.

B3.3.6A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 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금융부채의 남은 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

한4)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에 상대방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동 수수료는 제외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수정

문단 BC3.32 다음에 새로운 소제목과 문단 BC3.33~BC3.36을 추가하였다. 이 문단들과 관련 소제목은 읽기 쉽도록 밑줄을 긋지 않았다.

금융부채 제거를 위한 10% 테스트에서의 수수료 (IFRS 2018-2020 연차개선)

- BC3.33 문단 3.3.2에 따라 다음 (1) 또는 (2)의 경우에 최초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 (1)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 (2)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문단 B3.3.6은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라고 명시한다(10% 테스트). 문단 B3.3.6에 따르면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10% 테스트에 포함한다.

- BC3.34 IASB는 10% 테스트에 어떤 수수료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문단 B3.3.6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명확화는,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동에 기초하여 기존 계약조건과 새로운 계약조건의 차이의 유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 테스트의 목적에 부합한다.

- BC3.35 문단 7.2.35의 경과규정은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할 경우 기대되는 효익이 이전의 모든 금융부채의 변경과 교환을 재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비용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IASB의 견해를 반영한다. 특히 금융부채는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거나 교환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추세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 BC3.36 IAS 39 문단 AG62는 IFRS 9 문단 B3.3.6의 요구사항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에 IFRS 9를 적용하지 않았고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된 기업은 한시적으로 IAS 39를 적용할 수 있다. IASB는 IFRS 9의 적용에 대한 한시적 면제 규정을 제공할 때, 이 면제규정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성격 때문에 IAS 39(위험 회피회계 제외)의 유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IASB는 IAS 39 문단 AG62를 개정하지 않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적용사례 개정

문단 IE5의 사례13의 '가'를 수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리스이용자의 측정(문단 18~41, B34~B41)

IE5

...

사례 13. 리스이용자의 측정과 리스기간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리스이용자는 건물의 한 층을 10년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 리스에는 5년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리스료는 최초 기간에 매년 50,000원씩이고, 선택권에 따라 가감될 수 있는 기간(이하 '선택권 기간'이라 한다)에는 매년 55,000원씩이며, 모든 지급액은 연초에 지급한다.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를 체결하기 위하여 리스개설직접원가 20,000원을 부담한다. 그 중 15,000원은 건물 해당 층의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관련되고, 5,000원은 리스를 주선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련된다. 리스를 체결하면서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게 인센티브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00원과 ~~리스이용자가 한 리스개량 7,000원을 변제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개시일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가 않으므로 리스기간이 10년이라고 결론 내린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다.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5%이고, 이 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의 가치와 비슷한 금액을 같은 통화로 10년간 빌릴 수 있는 고정이율을 반영한다.

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1차 연도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부담하며, 리스제공자에게서 리스 인센티브를 받고, 50,000원씩 나머지 9회의 지급액을 연 5%로 할인한 현재가치 355,391원으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사례 13. 리스이용자의 측정과 리스기간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리스이용자는 리스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사용권자산	405,391원	리스부채	355,391원
		현금 (1차 연도의 리스료)	50,000원

사용권자산	20,000원	현금 (리스개설직접원가)	20,000원
-------	---------	------------------	---------

현금 (리스 인센티브)	5,000원	사용권자산	5,000원
-----------------	--------	-------	--------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에게서 받는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 인센티브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관련되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이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개량에 들인 원가는 사용권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결론도출근거 수정

문단 BC173 다음에 새로운 소제목과 문단 BC173A ~ BC173B를 추가하였다. 이 문단들과 관련 소제목은 읽기 쉽도록 밑줄을 긋지 않았다.

리스 인센티브 (IFRS 2018-2020 연차개선)

BC173A IASB는 IFRS 16의 사례 13에서 리스 인센티브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한 방식 때문에 IFRS 16을 적용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개정 전 사례 13에서 리스개량과 관련한 변제액을 사실관계의 일부로 포함하였으나, 그 변제액이 IFRS 16의 리스 인센티브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BC173B IASB는 사례 13에서 리스개량과 관련한 변제액 부분을 삭제하여 혼란 가능성을 없애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를 삭제하더라도 읽게 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개정

문단 22를 개정하였고 문단 65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인식과 측정

...

22 당해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세금~~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흐름 (예를 들어, 수확 후 조림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 원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시행일과 경과규정

...

65 2020년 0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결론도출근거 수정

문단 BC1과 문단 BC5 및 BC8 위의 소제목을 수정하였다. 이 문단과 소제목을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문단 BC10 다음에 새로운 소제목과 문단 BC11~BC12를 추가하였다. 이 문단들과 관련 소제목은 읽기 쉽도록 밑줄을 긋지 않았다.

BC1 IASB가 2008년 5월 연차 개선과 2014년 6월 '농림어업: 생산용식물'⁵⁾(IAS 16 및 IAS 41의 개정)의 공표를 포함하여에 따라 IAS 41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

인식과 측정(2008년 개정)

할인율(문단 20) (2008년 개정)

...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문단 21) (2008년 개정)

...

공정가치 측정에서의 세금 (2020년 개정)

BC11 2008년 개정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다(문단 BC5~BC7 참조). 그 당시에 IASB는 세금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 위하여 IAS 41 문단 22를 개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전에는 IAS 41에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전 현금흐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그 현금흐름을 할인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다.

BC12 2020년에 IASB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문단 22를 개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IAS 41의 요구사항과 IFRS 13의 요구사항을 일치시킨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IFRS 13은 단일의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며, IFRS 13에서 논의한 현재가치기법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할 때 IFRS 13 문단 B14에 따르면 현금흐

름과 할인율에 대한 가정은 내부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할인율로 할인하거나 세전 현금흐름을 그 현금흐름과 일관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도 있다.

- (2) 2008년에 IAS 41을 개정할 때 IASB의 의도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문단 BC6 참조). 문단 22에서 '세금'을 삭제하는 것은 그러한 의도와 일관된다.

개정안 영·한 대비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Amendments to IFRS 1 <i>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안
<p>Amendments to IFRS 1 <i>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Paragraph 39AG and, in Appendix D, paragraph D13A are added. Paragraph D1(f) is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p> </div> <p>Effective date</p> <hr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 style="text-align: center;">...</p> <p>39AG <u>Annual Improvements to IFRS Standards 2018 - 2020, issued in May 2020, amended paragraph D1(f) and added paragraph D13A. An entity shall apply that amendment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2.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e amendment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u></p>	<p>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문단 39AG와 부록 D의 문단 D13A를 추가하였다. 문단 D1(6)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p> </div> <p>시행일</p> <hr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 style="text-align: center;">...</p> <p>39AG 2020년 0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D1(6)을 개정하였고 문단 D13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p>
<p>Appendix D</p> <p>Exemptions from other IFRSs</p>	<p>부록 D</p> <p>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p>

<p style="text-align: center;">Amendments to IFRS 1 <i>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p>	<p style="text-align: center;">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안</p>
<p><i>This appendix is an integral part of the IFRS.</i></p>	<p>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p>
<p>D1 An entity may elect to us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xemptions:</p> <p>...</p> <p>(f) cumulative translation differences (paragraphs D12 - D13A and D13);</p> <p>...</p> <p>Cumulative translation differences</p> <p>...</p>	<p>D1 다음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p> <p>(6) 누적환산차이(문단 D12~D13A와 D13)</p> <p>...</p> <p>누적환산차이</p> <p>...</p>
<p><u>D13A Instead of applying paragraph D12 or paragraph D13, a subsidiary that uses the exemption in paragraph D16(a) may elect, in its financial statements, to measure cumulative translation differences for all foreign operations at the carrying amount that would be included in the parent'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the parent's date of transition to IFRSs, if no adjustments were made for consolidation procedures and for the effects of the business combination in which the parent acquired the subsidiary. A similar election is available to an associate or joint venture that</u></p>	<p><u>D13A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문단 D12나 문단 D13을 적용하는 대신에, 재무제표에서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다.</u></p> <p>...</p>

Amendments to IFRS 1 <i>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안
<p>uses the exemption in paragraph D16(a).</p> <p>...</p>	
<p>Amendment to Basis for Conclusion on IFRS 1 <i>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Paragraph BC30(d) is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p> <p>After paragraph BC55, a new heading and paragraphs BC55A - BC55C are added. These paragraphs and their related heading have not been underlined for ease of reading.</p> </div> <p>BC30 An entity may elect to us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xemptions:</p> <p>...</p> <p>(d) cumulative translation differences (paragraphs BC53 - <u>BC55C</u><u>BC55</u>);</p> <p>...</p> <p><i>Subsidiary as a first-time adopter(Annual Improvements to IFRS Standards 2018 - 2020)</i></p> <p>BC55A Paragraph D16(a) provides a subsidiary that becomes a first-time adopter later than its parent with an exemption relating to the measurement of its assets and liabilities. Paragraph BC59-BC60 explain that the Board</p>	<p>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결론도출근거 수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문단 BC30(4)를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p> <p>문단 BC55 다음에 새로운 소제목과 문단 BC55A~BC55C를 추가하였다. 이 문단들과 이와 관련된 소제목은 읽기 쉽도록 밑줄을 긋지 않았다.</p> </div> <p>BC30 기업은 다음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p> <p>(4) 누적환산차이 (문단 BC53~<u>BC55C</u><u>BC55</u>)</p> <p>...</p> <p>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IFRS 2018-2020 연차개선)</p> <p>BC55A 문단 D16(1)에서는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에게 자산과 부채의 측정과 관련된 면제규정을 제공한다. 문단 BC59~BC60에서는 종속기업이 서로 다른 전환일을 기준으로 한 두 조 (two parallel sets)의 회계기록을 유</p>

Amendments to IFRS 1 <i>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안
<p>provided this exemption so that a subsidiary would not have to keep two parallel sets of accounting records based on different dates of transition to IFRSs.</p> <p>BC55B The exemption in paragraph D16(a) does not apply to components of equity. Accordingly, before the amendment that added paragraph D13A, a subsidiary that became a first-time adopter later than its parent might have been required to keep two parallel sets of accounting records for cumulative translation differences based on different dates of transition to IFRSs. Following the rationale in paragraph BC59-BC60, the Board decided to extend the exemption in paragraph D16(a) to cumulative translation differences to reduce costs for first-time adopters. The Board noted that IFRS 1 already provides an exemption relating to cumulative translation differences. Extending the exemption in paragraph D16(a) would therefore not diminish the relevance of information reported by a subsidiary that becomes a first-time adopter later than its parent.</p>	<p>지하지 않도록 IASB가 이러한 면제 규정을 제공하였다고 설명한다.</p> <p>BC55B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은 자본의 구성요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단 D13A를 추가하는 개정을 하기 전에는,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된 종속기업은 서로 다른 전환일을 기준으로 한 두 조(two parallel sets)의 누적환산차이에 대한 회계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문단 BC59~BC60에서 기술한 이유에 따라, IASB는 최초채택기업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의 적용범위를 누적환산차이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1에서 이미 누적환산차이와 관련된 면제규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이 보고하는 정보의 목적적합성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p>
<p>BC55C Entities that apply paragraph D16(a)</p>	<p>BC55C 문단 D16(1)을 적용하는 기업은 일</p>

Amendments to IFRS 1 <i>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안
<p>could in some situations find it burdensome to measure cumulative translation differences using the amount reported by the parent. The Board therefore decided to permit, but not require, a subsidiary applying paragraph D16(a) to use that exemption for cumulative translation differences. The amendment also applies to an associate or joint venture that uses the exemption in paragraph D16(a).</p>	<p>부 상황에서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문단 D16(1)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이 누적환산차이에 대하여 이 면제규정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되, 요구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도 적용된다.</p>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Amendment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안
<p>Amendment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p> <p>Paragraph 7.1.9, paragraph 7.2.35 and its heading, and paragraph B3.3.6A are added. Paragraph B3.3.6 is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B3.3.6A have not been amended but have been moved from paragraph B3.3.6.</p>	<p>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p> <p>문단 7.1.9, 7.2.35와 문단 7.2.35의 소제목, 문단 B3.3.6A를 추가하였다. 문단 B3.3.6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문단 B3.3.6A의 요구사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문단 B3.3.6에서 분리하였다.</p>
<p>Chapter 7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p> <p>7.1 Effective date</p>	<p>제7장 시행일과 경과규정</p> <p>제7.1절 시행일</p>
<p>...</p> <p>7.1.9 <u>Annual Improvements to IFRS Standards 2018-2020, issued in May 2020, added paragraphs 7.2.35 and B3.3.6A and amended paragraph B3.3.6. An entity shall apply that amendment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2.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e amendment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u></p>	<p>...</p> <p>7.1.9 2020년 O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7.2.35와 B3.3.6A를 추가하고 문단 B3.3.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p>
<p>7.2 Transition</p> <p>...</p>	<p>제7.2절 경과규정</p> <p>...</p> <p>연차개선에 대한 경과규정</p>

Amendment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Transition for Annual Improvements to IFRS Standards</u></p> <p>7.2.35 <u>An entity shall apply Annual Improvements to IFRS Standards 2018 - 2020 to financial liabilities that are modified or exchanged on or after the beginning of the annual reporting period in which the entity first applies the amendment.</u></p>	<p>7.2.3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은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된 금융부채에 적용한다.</p>
<p>Appendix B Application Guidance <i>This appendix is an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i></p> <p style="text-align: center;">...</p> <p>Recognition and derecognition (Chapter 3)</p> <hr/>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Derecognition of financial liabilities (Section 3.3)</p> <p style="text-align: center;">...</p> <p>B3.3.6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3.3.2, the terms are substantially different if the discounted present value of the cash flows under the new terms, including any fees paid net of any fees received and discounted using the original effective interest rate, is at least 10 per cent different from the discounted</p>	<p>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인식과 제거 (제3장)</p> <hr/>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금융부채의 제거(제3.3절)</p> <p style="text-align: center;">...</p> <p>B3.3.6 문단 3.3.2를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p>

Amendment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안
<p>present value of the remaining cash flows of the original financial liability. <u>In determining those fees paid net of fees received, a borrower includes only fees paid or receiv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lender, including fees paid or received by either the borrower or lender on the other's behalf.</u></p>	<p>을 사용한다. <u>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결정할 때,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한4}한다.</u></p> <p>한4)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에 상대방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동 수수료는 제외한다.</p>
<p>B3.3.6A If an exchange of debt instruments or modification of terms is accounted for as an extinguishment, any costs or fees incurred are recognised as part of the gain or loss on the extinguishment. If the exchange or modification is not accounted for as an extinguishment, any costs or fees incurred adjust the carrying amount of the liability and are amortised over the remaining term of the modified liability.</p> <p>...</p>	<p>B3.3.6A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금융부채의 남은 기간에 걸쳐 상각한다.</p> <p>...</p>
<p>Amendment to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After paragraph BC3.32, a new heading and paragraphs BC3.33 - BC3.36 are added. These paragraphs and their related heading have not been underlined for ease of reading.</p> </div>	<p>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결론도출근거 수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문단 BC3.32 다음에 새로운 소제목과 문단 BC3.33~BC3.36을 추가하였다. 이 문단들과 관련 소제목은 읽기 쉽도록 밑줄을 긋지 않았다.</p> </div>

Amendment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안
<p data-bbox="292 239 791 481">Fees in the '10 per cent' Test for Derecognition of Financial Liabilities (<i>Annual Improvements to IFRS Standards 2018 - 2020</i>)</p> <p data-bbox="204 557 791 799">BC3.33 Paragraph 3.3.2 requires an entity to derecognise the original financial liability and recognise a new financial liability when there is:</p> <ul data-bbox="308 822 791 1223" style="list-style-type: none"> (a) an exchange between an existing borrower and lender of debt instruments with substantially different terms; or (b) a substantial modification of the terms of an existing financial liability or a part of it. <p data-bbox="320 1243 791 1800">Paragraph B3.3.6 specifies that the terms are substantially different if the discounted present value of the cash flows under the new terms using the original effective interest rate is at least 10 per cent different from the discounted present value of the remaining cash flows of the original financial liability (10 per cent test).</p> <p data-bbox="320 1821 791 2011">Paragraph B3.3.6 requires an entity to include 'any fees paid net of any fees received' in the 10 per cent test.</p>	<p data-bbox="903 239 1402 378">금융부채 제거를 위한 10% 테스트에서의 수수료 (IFRS 2018-2020 연차개선)</p> <p data-bbox="815 557 1402 696">BC3.33 문단 3.3.2에 따라 다음 (1) 또는 (2)의 경우에 최초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p> <ul data-bbox="922 822 1402 1223"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2)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p data-bbox="932 1243 1402 1800">문단 B3.3.6은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라고 명시한다(10% 테스트). 문단 B3.3.6에 따르면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10% 테스트에 포함한다.</p>
BC3.34 The Board decided to amend	BC3.34 IASB는 10% 테스트에 어떤 수수료

Amendment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안
<p>paragraph B3.3.6 in response to a request to clarify which fees an entity includes in the 10 per cent test. The clarification aligns with the objective of the test, which is to quantitatively assess the significance of any difference between the old and new contractual terms on the basis of the changes in the contractual cash flows between the borrower and lender.</p>	<p>료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해당 라는 요청에 따라 문단 B3.3.6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명확화는, 대역자와 차입자 간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동에 기초하여 기존 계약조건과 새로운 계약조건의 차이의 유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 테스트의 목적에 부합한다.</p>
<p>BC3.35 The transition requirements in paragraph 7.2.35 reflect the Board's view that the expected benefit from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the amendment would not outweigh the cost of requiring entities to reassess all previous modifications and exchanges. In particular, retrospective application would be unlikely to provid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with trend information because financial liabilities are generally modified or exchanged on an ad hoc basis.</p>	<p>BC3.35 문단 7.2.35의 경과규정은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할 경우 기대되는 효익이 이전의 모든 금융부채의 변경과 교환을 재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비용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IASB의 견해를 반영한다. 특히 금융부채는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거나 교환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추세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p>
<p>BC3.36 Paragraph AG62 of IAS 39 includes the same requirements as those in paragraph B3.3.6 of IFRS 9. An entity that has not previously applied any version of IFRS 9 and whose activities are predominantly connected with insurance is permitted to apply IAS 39 for a limited period of</p>	<p>BC3.36 IAS 39 문단 AG62는 IFRS 9 문단 B3.3.6의 요구사항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에 IFRS 9를 적용하지 않았고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된 기업은 한시적으로 IAS 39를 적용할 수 있다. IASB는 IFRS 9의 적용에 대한 한시적 면제 규정을 제공할 때, 이 면제규정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성격 때문에</p>

Amendment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안
<p>time. In providing the temporary exemption from applying IFRS 9, the Board had not contemplated maintaining IAS 39 (other than for hedge accounting) given the temporary and limited nature of the exemption. Therefore, the Board did not amend paragraph AG62 of IAS 39.</p>	<p>IAS 39(위험회피회계 제외)의 유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IASB는 IAS 39 문단 AG62를 개정하지 않았다.</p>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Amendment to Illustrative Examples accompanying IFRS 16 <i>Leases</i>	K-IFRS 제1116호 '리스' 적용사례 개정안
<p>Amendment to Illustrative Examples accompanying IFRS 16 <i>Leases</i></p> <p>Part 1 of Illustrative Example 13 in paragraph IE5 is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p> <p>Lessee measurement (paragraphs 18 - 41 and B34 - B41)</p> <hr/> <p>IE5 ...</p> <p>Example 13—Measurement by a lessee and accounting for a change in the lease term</p> <p><i>Part 1—Initial measurement of the right-of-use asset and the lease liability</i></p> <p><i>Lessee enters into a 10-year lease of a floor of a building, with an option to extend for five years. Lease payments are CU50,000 per year during the initial term and CU55,000 per year during the optional period, all payable at the beginning of each year. To obtain the lease, Lessee incurs initial direct costs of CU20,000, of which CU15,000 relates to a payment to a former tenant occupying that floor of the building and CU5,000 relates to a commission paid to the real estate agent that arranged the lease. As an incentive to Lessee for entering into</i></p>	<p>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적용사례 개정</p> <p>문단 IE5의 사례13의 '가'를 수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p> <p>리스이용자의 측정(문단 18~41, B34~B41)</p> <hr/> <p>IE5 ...</p> <p>사례 13. 리스이용자의 측정과 리스기간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p> <p>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p> <p>리스이용자는 건물의 한 층을 10년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 리스에는 5년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리스료는 최초 기간에 매년 50,000원씩이고, 선택권에 따라 가감될 수 있는 기간(이하 '선택권 기간'이라 한다)에는 매년 55,000원씩이며, 모든 지급액은 연초에 지급한다.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를 체결하기 위하여 리스개설직접원가 20,000원을 부담한다. 그 중 15,000원은 건물 해당 층의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관련되고, 5,000원은 리스를 주선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련된다. 리스를 체결하면서</p>

Amendment to Illustrative Examples accompanying IFRS 16 <i>Leases</i>	K-IFRS 제1116호 '리스' 적용사례 개정안
<p>Example 13—Measurement by a lessee and accounting for a change in the lease term</p> <p><i>the lease, Lessor agrees to reimburse to Lessee the real estate commission of CU5,000 and Lessee's leasehold improvements of CU7,000.</i></p> <p><i>At the commencement date, Lessee concludes that it is not reasonably certain to exercise the option to extend the lease and, therefore, determines that the lease term is 10 years.</i></p> <p><i>The interest rate implicit in the lease is not readily determinable. Lessee's incremental borrowing rate is 5 per cent per annum, which reflects the fixed rate at which Lessee could borrow an amount similar to the value of the right-of-use asset, in the same currency, for a 10-year term, and with similar collateral.</i></p> <p><i>At the commencement date, Lessee makes the lease payment for the first year, incurs initial direct costs, receives <u>the lease incentive</u> incentives from Lessor and measures the lease liability at the present value of the remaining nine payments of CU50,000, discounted at the interest rate of 5 per cent per annum, which is CU355,391.</i></p>	<p>사례 13. 리스이용자의 측정과 리스기간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p> <p>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게 인센티브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00원과 리스이용자가 한 리스개량 7,000원을 변제해 주기로 합의하였다.</p> <p>개시일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가 않으므로 리스기간이 10년이라고 결론 내린다.</p> <p>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다.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5%이고, 이 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의 가치와 비슷한 금액을 같은 통화로 10년간 빌릴 수 있는 고정이율을 반영한다.</p> <p>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1차 연도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부담하며, 리스제공자에게서 리스 인센티브를 받고, 50,000원씩 나머지 9회의 지급액을 연 5%로 할인한 현재가치 355,391원으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p>

Amendment to Illustrative Examples accompanying IFRS 16 <i>Leases</i>	K-IFRS 제1116호 '리스' 적용사례 개정안																																	
<p>Example 13 – Measurement by a lessee and accounting for a change in the lease term</p> <p>Lessee initially recognises assets and liabilities in relation to the lease as follows.</p> <table data-bbox="231 600 758 1848"> <tr> <td>Right-of-use asset</td> <td>CU405,391</td> </tr> <tr> <td>Lease liability</td> <td>CU355,391</td> </tr> <tr> <td>Cash (lease payment for the first year)</td> <td>CU50,000</td> </tr> <tr> <td>Right-of-use asset (initial direct costs)</td> <td>CU20,000</td> </tr> <tr> <td>Cash (lease incentive)</td> <td>CU5,000</td> </tr> <tr> <td>Right-of-use asset</td> <td>CU5,000</td> </tr> </table> <p>Lessee accounts for the reimbursement of leasehold improvements from Lessor applying other relevant</p>	Right-of-use asset	CU405,391	Lease liability	CU355,391	Cash (lease payment for the first year)	CU50,000	Right-of-use asset (initial direct costs)	CU20,000	Cash (lease incentive)	CU5,000	Right-of-use asset	CU5,000	<p>사례 13. 리스이용자의 측정과 리스기간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p> <p>리스이용자는 리스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p> <table data-bbox="845 600 1364 1108"> <tr> <td>사용권자산</td> <td>405,391원</td> <td></td> </tr> <tr> <td>리스부채</td> <td></td> <td>355,391원</td> </tr> <tr> <td>현금 (1차 연도의 리스료)</td> <td></td> <td>50,000원</td> </tr> <tr> <td>사용권자산</td> <td>20,000원</td> <td></td> </tr> <tr> <td>현금 (리스개설직접원가)</td> <td></td> <td>20,000원</td> </tr> <tr> <td>현금 (리스 인센티브)</td> <td>5,000원</td> <td></td> </tr> <tr> <td>사용권자산</td> <td></td> <td>5,000원</td> </tr> </table> <p>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에게서 받는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 인센티브로 회계</p>	사용권자산	405,391원		리스부채		355,391원	현금 (1차 연도의 리스료)		50,000원	사용권자산	20,000원		현금 (리스개설직접원가)		20,000원	현금 (리스 인센티브)	5,000원		사용권자산		5,000원
Right-of-use asset	CU405,391																																	
Lease liability	CU355,391																																	
Cash (lease payment for the first year)	CU50,000																																	
Right-of-use asset (initial direct costs)	CU20,000																																	
Cash (lease incentive)	CU5,000																																	
Right-of-use asset	CU5,000																																	
사용권자산	405,391원																																	
리스부채		355,391원																																
현금 (1차 연도의 리스료)		50,000원																																
사용권자산	20,000원																																	
현금 (리스개설직접원가)		20,000원																																
현금 (리스 인센티브)	5,000원																																	
사용권자산		5,000원																																

Amendment to Illustrative Examples accompanying IFRS 16 <i>Leases</i>	K-IFRS 제1116호 '리스' 적용사례 개정안
<p>Example 13 – Measurement by a lessee and accounting for a change in the lease term</p> <p>Standards and not as a lease incentive applying IFRS 16. This is because costs incurred on leasehold improvements by Lessee are not included within the cost of the right-of-use asset.</p> <p>...</p>	<p>사례 13. 리스이용자의 측정과 리스기간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p> <p>처리하지 않고 관련되는 다른 기업회계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이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개량에 들인 원가는 사용권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p> <p>...</p>
<p>Amendment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6 Leases</p> <p>After paragraph BC173, a new heading and paragraphs BC173A - BC173B are added. These paragraphs and their related heading have not been underlined for ease of reading.</p> <p>Lease Incentives (Annual Improvements to IFRS Standards 2018 - 2020)</p> <p>BC173A The Board was informed about the potential for confusion in applying IFRS 16 because of the way Illustrative Example 13 accompanying IFRS 16 had illustrated the requirements for lease incentives. Before the amendment, Illustrative Example 13 had included as part of the fact pattern a reimbursement relating to leasehold improvements; the example had not explained clearly enough the</p>	<p>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결론도출근거 수정</p> <p>문단 BC173 다음에 새로운 소제목과 문단 BC173A ~ BC173B를 추가하였다. 이 문단과 관련 소제목은 읽기 쉽도록 밑줄을 긋지 않았다.</p> <p>리스 인센티브 (IFRS 2018-2020 연차개선)</p> <p>BC173A IASB는 IFRS 16의 사례 13에서 리스 인센티브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한 방식 때문에 IFRS 16을 적용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개정 전 사례 13에서 리스개량과 관련한 변제액을 사실관계의 일부로 포함하였으나, 그 변제액이 IFRS 16의 리스 인센티브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p>

Amendment to Illustrative Examples accompanying IFRS 16 <i>Leases</i>	K-IFRS 제1116호 '리스' 적용사례 개정안
<p>conclusion as to whether the reimbursement would meet the definition of a lease incentive in IFRS 16.</p>	
<p>BC173B The Board decided to remove the potential for confusion by deleting from Illustrative Example 13 the reimbursement relating to leasehold improvements. The Board concluded that little would be lost by deleting it.</p>	<p>BC173B IASB는 사례 13에서 리스개량과 관련한 변제액 부분을 삭제하여 혼란 가능성을 없애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를 삭제하더라도 잃게 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p>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Amendment to IAS 41 <i>Agriculture</i>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개정안
<p>Amendment to IAS 41 <i>Agriculture</i></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Paragraph 22 is amended and paragraph 65 is ad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p> </div>	<p>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개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문단 22를 개정하였고 문단 65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p> </div>
<p>Recognition and measurement</p> <hr/> <p>...</p> <p>22 An entity does not include any cash flows for financing the assets; taxation; or re-establishing biological assets after harvest (for example, the cost of replanting trees in a plantation forest after harvest).</p> <p>...</p>	<p>인식과 측정</p> <hr/> <p>...</p> <p>22 당해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세금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흐름(예를 들어, 수확 후 조림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 원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p> <p>...</p>
<p>Effective date and transition</p> <hr/> <p>...</p> <p>65 <u>Annual Improvements to IFRS Standards 2018-2020, issued in May 2020, amended paragraph 22. An entity shall apply that amendment to fair value measurements on or after the beginning of the first annual reporting period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2.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e amendment for an</u></p>	<p>시행일과 경과규정</p> <hr/> <p>...</p> <p>65 2020년 ○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p>

Amendment to IAS 41 <i>Agriculture</i>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개정안
<p><u>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u></p>	
<p>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41 <i>Agriculture</i></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Paragraph BC1 and the headings above paragraph BC5 and BC8 are amended. New text in this paragraph and in these headings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After paragraph BC10, a new heading and paragraphs BC11 - BC12 are added. These paragraphs and their related heading have not been underlined for ease of reading.</p> </div>	<p>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결론도출근거 수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문단 BC1과 문단 BC5 및 BC8 위의 소제목을 수정하였다. 이 문단과 소제목의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문단 BC10 다음에 새로운 소제목과 문단 BC11~BC12를 추가하였다. 이 문단들과 관련 소제목은 읽기 쉽도록 밑줄을 긋지 않았다.</p> </div>
<p>BC1 This Basis for Conclusions summarises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considerations in reaching its conclusions on amending IAS 41 <i>Agriculture</i>, including by issuing Improvements to IFRSs in May 2008 and by Agriculture Bearer Plants (Amendments to IAS 16 and IAS 41)¹ in June 2014 ...</p> <p>...</p>	<p>BC1 IASB가 2008년 5월 연차 개선과 2014년 6월 '농림어업: 생산용식물'⁵⁾(IAS 16 및 IAS 41의 개정)의 공표를 포함하여 연에 따라 IAS 41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p> <p>...</p>
<p>Recognition and measurement — 2008 amendments</p> <hr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인식과 측정(2008년 개정)</p> <hr style="border: 1px solid black;"/>

Amendment to IAS 41 <i>Agriculture</i>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개정안
<p><u>Discount rate (paragraph 20) - 2008 amendments</u></p> <p>...</p> <p><u>Additional biological transformation (paragraph 21) - 2008 amendments</u></p> <p>...</p> <p><u>Taxation in Fair Value Measurements - 2020 amendment</u></p> <p>BC11 The 2008 amendments removed the requirement for entities to use a pre-tax discount rate to discount cash flows when measuring fair value (see paragraphs BC5-BC7). At that time the Board did not amend paragraph 22 of IAS 41 to delete the reference to cash flows for taxation. Consequently, before <i>Annual Improvements to IFRS Standards 2018-2020</i>, IAS 41 had required an entity to use pre-tax cash flows when measuring fair value but did not require the use of a pre-tax discount rate to discount those cash flows.</p>	<p><u>할인율(문단 20) (2008년 개정)</u></p> <p>...</p> <p><u>추가적인 생물적 변환(문단 21) (2008년 개정)</u></p> <p>...</p> <p><u>공정가치 측정에서의 세금 (2020년 개정)</u></p> <p>BC11 2008년 개정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다(문단 BC5~BC7 참조). 그 당시에 IASB는 세금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 위하여 IAS 41 문단 22를 개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전에는 IAS 41에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전 현금흐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그 현금흐름을 할인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다.</p>
<p>BC12 In 2020, the Board amended paragraph 22 to remove the requirement to exclude cash flows for taxation when measuring fair value because:</p> <p>(a) doing so aligns the requirements in IAS 41 on fair</p>	<p>BC12 2020년에 IASB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문단 22를 개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p> <p>(1)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IAS 41의 요구사항과 IFRS 13의 요구사항</p>

Amendment to IAS 41 <i>Agriculture</i>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개정안
<p>value measurement with those in IFRS 13 <i>Fair Value Measurement</i>. When measuring fair value, IFRS 13 neither prescribes the use of a single present value technique nor limits the use of present value techniques to only those discussed in that Standard. However, when using a present value technique, paragraph B14 of IFRS 13 requires assumptions about cash flows and discount rates to be internally consistent. Depending on the particular facts and circumstances, an entity applying a present value technique might measure fair value by discounting after-tax cash flows using an after-tax discount rate or pre-tax cash flows at a rate consistent with those cash flows.</p> <p>(b) it would appear the Board's intention in amending IAS 41 in 2008 was to permit entities to include tax cash flows in measuring fair value (see paragraph BC6). Removing 'taxation' from paragraph 22 is consistent with that intent.</p>	<p>을 일치시킨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IFRS 13은 단일의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며, IFRS 13에서 논의한 현재가치기법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할 때 IFRS 13 문단 B14에 따르면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가정은 내부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할인율로 할인하거나 세전 현금흐름을 그 현금흐름과 일관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도 있다.</p> <p>(2) 2008년에 IAS 41을 개정할 때 IASB의 의도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문단 BC6 참조). 문단 22에서 '세금'을 삭제하는 것은 그러한 의도와 일관된다.</p>

관 련 법 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⑦ (생략)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⑦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95